

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작성예시

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1에 의거하여 거래가격 6억원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
「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」 제출을 의무화 합니다.

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

※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시를 합니다. 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시	처리기간		
제출인 (매수인)	성명(법인명) 계약자 성명	주민등록번호(법인·외국인등록번호) 계약자 주민등록번호		
	주소(법인소재지) 계약자 등본상 주소	(휴대)전화번호	계약자 연락처(휴대전화)	
① 자금 조달계획	자기 자금	② 금융기관 예금액 본인명의 예금(적금 등) 원	③ 주식·채권 매각대금 본인명의 주식·채권 및 각종 유가증권 매각 등 원	
		④ 증여·상속 증여 및 상속으로 조달하는 자금 원	⑤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현금 보유자금 및 자기자금 중 다른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본인자산 원	
		[] 부부 [] 직계존비속(관계: 부모, 자녀 등) [] 그 밖의 관계(형제, 친인척 등)	[] 보유 현금 [] 그 밖의 자산(종류: 미래소득, 금융상품 해지금 등)	
		⑥ 부동산 처분대금 등 본인 소유의 부동산 매도금, 보증금 회수 등 원	⑦ 소계 ②~⑥ 의 합계 금액 원	
		⑧ 금융기관 대출액 합계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그 밖의 대출의 합계 원	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그 밖의 대출	원 마이너스 통장 등 신용대출 자금 원 중도금 대출금액 및 타부동산 담보대출 등 원 (대출 종류: 중도금 집단 대출)
	차입금 등	기존 주택 보유 여부 (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만 기재) ☒ 미보유 [] 보유 (건)		
		⑨ 임대보증금 취득 주택 향후 임대 시 실행 계획 자금 (18번 입주계획: 임대 체크 시) 원	⑩ 회사지원금·사채 대부업체, 소속회사 대여자금 등 원	
		⑪ 그 밖의 차입금 <small>⑧~⑩에 포함되지 않는 차입금(돈을 빌리는 등) 원</small>	⑫ 소계 ⑧~⑪ 의 합계 금액 원	
		<small>해당사항 체크</small> [] 부부 [] 직계존비속(관계: 부모) [] 그 밖의 관계(형제, 친인척 등)		
		⑬ 합계	⑦+⑫ 의 합계 금액 = 총분양가 원	
	⑭ 조달자금 지급방식	총 거래금액	총분양가 원	
		⑮ 계좌이체 금액	⑬과 금액 동일 원	
		⑯ 보증금·대출 승계 금액	미 작성 원	
⑰ 현금 및 그 밖의 지급방식 금액		미 작성 원		
지급 사유 ()		미 작성)		
⑯ 입주 계획	☒ 본인입주 [] 본인 외 가족입주 (입주 예정 시기: 2025년 06월)	[] 임대 (전·월세)	[] 그 밖의 경우 (재건축 등)	
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1 제2호나목, 같은 표 제3호가목 전단, 같은 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6항·제7항·제9항·제10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제출합니다.				
제출인 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		작성 금지 일 계약자 성명 (서명 또는 인)		